

18년 경찰채용 1차 정답 및 해설

문 1] 정답 ④

- ① (X)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관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관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,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(대판 1999.9.15, 95도2870 전원합의체)
- ② (X)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“자수”를 ‘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’로 한정하는 풀이는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(대판 1997.3.20, 96도1167 전원합의체).
- ③ (X)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(대판 2011.10.13, 2011도6287).
- ④ (O) 대판 2017.12.21, 2015도8335 전원합의체

문 2] 정답 ②

- ① (O) 대판 1996.9.6, 95도2551
- ② (X) 당해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죄책을 진다(대판 2004.6.24., 2002도995)
- ③ (O) 대판 2008.3.27, 2008도89.
- ④ (O) 2015.11.12, 2015도6809 전원합의체

문 3] 정답 ④

- ㉠ (O) 대판 1997.6.24, 97도1075
- ㉡ (O) 대판 1983.1.18, 82도2341
- ㉢ (O) 대판 1983.1.18, 82도2341
- ㉣ (X)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(대판 1998.12.8, 98도3416)

문 4] 정답 ④

- ① (O) 대판 1992.12.22. 92도2540
- ② (O) 대판 2011.7.14, 2011도639
- ③ (O) 대판 2006.9.8, 2006도148
- ④ (X) 피고인의 위 공개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(대판 2011.3.17, 2006도8839 전원합의체)

문 5] 정답 ③

- ㉠ (X)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(대판 2005.2.25, 2004도8259)

- ㉡ (O) 대판 1997.6.13, 97도957
- ㉢ (X)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(제27조).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.
- ㉣ (O) 대판 2015.03.20, 2014도16920

문 6] 정답 ③

- ① (O) 대판 2009.9.24, 2009도4998
- ② (O) 대판 2002.3.26, 2001도6641
- ③ (X)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(대판 2006.9.14, 2006도4127).
- ④ (O) 대판 2011.6.9, 2010도10677

문 7] 정답 ②

- ① (O) 대판 2006.5.25, 2003도3945
- ② (X) 이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01.3.9, 2000도938).
- ③ (O) 대판 1997.4.17, 96도3376 전원합의체
- ④ (O) 대판 1984.11.27, 84도1862

문 8] 정답 ①

- ① (X)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,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(대판 1986.10.28, 86도1517).
- ② (O) 대판 2008.3.13, 2007도9507
- ③ (O) 대판 1986.2.11, 85도448
- ④ (O) 대판 1984.4.24, 84도195

문 9] 정답 ③

- ㉠ (O) 대판 2007.5.10, 2007도1375
- ㉡ (X)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(대판 1975.8.29, 75도1996).
- ㉢ (X)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(대판 2017.5.31, 2017도3045).
- ㉣ (O) 대판 2013.2.21, 2010도10500

문 10] 정답 ②

- ㉠ (X)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(제60조). ※ 선고유예기간은 2년으로 법정화되어 있다.
- ㉡ (O) 대판 1988.6.21, 88도551
- ㉢ (X) ‘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’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

이 뇌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,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(대판 2003.2.20, 2001도6138 전원합의체).

- ㉔ (O) [1]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‘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’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.
[2]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(대결 2008.2.14, 2007도845).

문 11] 정답 ③

- ① (O) 대판 2010.7.15, 2010도1017
- ② (O) 대판 2007.9.28, 2007도606 전원합의체
- ③ (X)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(대판 2012.8.17, 2011도10451)
- ④ (O) 대판 2010.7.15, 2010도1017

문 12] 정답 ②

- ① (O) 대판 2008.2.14, 2007도8155
- ② (X)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·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(대판 2001.10.9, 2001도3594).
- ③ (O) 대판 2000.5.16, 99도5622
- ④ (O) 대판 2003.5.13, 2002도7420

문 13] 정답 ①

- ㉑ (X) [1]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.
[2]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(대판 2011.4.28, 2011도2170).
- ㉒ (O) 대판 1976.4.13, 75도781
- ㉓ (O) 대판 2008.7.24, 2008도3438
- ㉔ (X)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(대판 2007.3.15, 2006도2704).

문 14] 정답 ③

- ① (O) 대판 2000.4.11, 2000도565
- ② (O) 대판 2002.8.23, 2002도366
- ③ (X)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직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데도, 이와 달리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(대판 2012.11.29, 2012도10980)
- ④ (O) 2016.05.19, 2014도6992 전원합의체

문 15] 정답 ②

- ㉑ (X)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,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(대판 2011.1.20, 2008도10479 전원합의체). ※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㉒ (X)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(대판 2008. 4.24, 2008도1408).
- ㉓ (O) 대판 2012.9.13, 2010도11665
- ㉔ (O) 대판 2002.6.14, 2001도3534

문 16] 정답 ①

- ① (X)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(대판 2005.10.27, 2005도4528).
- ② (O) 대판 2001.8.24, 2001도2832
- ③ (O) 대판 2006.1.26, 2005도4764
- ④ (O) 대판 1982.6.22, 82도677

문 17] 정답 ④

- ㉑ (X)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사자명의의 문서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(대판 2005.2.24, 2002도18 전원합의체)
- ㉒ (O) 대판 2009.1.30, 2006도7777
- ㉓ (O) 대판 2017.5.17, 2016도13912
- ㉔ (O) 대판 2010.5.13, 2010도1040

문 18] 정답 ②

- ① (O) 대판 2014.01.29, 2013도13937
- ② (X)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
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
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
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, 또한 외국 국적선사의
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해운정책과 소
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
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
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
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,
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
2011.5.26, 2009도2453).
- ③ (O) 대판 1999.11.9, 99도2530
- ④ (O) 대판 2014.03.27, 2013도11357

문 19] 정답 ③

- ① (O) 대판 2009.6.25, 2009도3505
- ② (O) 대판 1999.9.21, 99도383
- ③ (X)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(대판
2003.7.25, 2003도1609).
- ④ (O) 대판 2005.8.25, 2005도1731.

문 20] 정답 ③

- ① (O) 대판 2010.1.21, 2008도942 전원합의체
- ② (O) 형법 제153조
- ③ (X)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
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, 신고
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
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
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
는 없다(대판 1998.2.24, 96도599).
- ④ (O) 대판 2014.07.24, 2014도6377